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 〉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9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거점의료기관 설치 · 운영 ...	2

I. 개요

1.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39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2. 25.

(3) 회 부 일 : 2025. 2.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대해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소아과·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고려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3호 신설 및 안 제13조제1항·제6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u>지원</u> 을 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지원 또는 사업</u> -----. 1.·2. (현행과 같음) 3. <u>소아과, 산부인과 등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 ----- ----- 지정하거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u>지정</u> 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u>지정 또는 설립·운영</u> ----- ----- -----.

나. 검토의견

-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및 이에 대한 지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및 동 기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2조제3호1)에 의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는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2항2)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3,821개소 운영 중(시도별 현황: [참고 1])

□ 그리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법 제12조3)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부족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의료기관 설립·운영 비용의 보조 등을 할 수 있음.

* 의료취약지 지정 현황: 응급의료분야 98개, 분만 108개, 소아청소년과 18개, 혈액투석 10개 지역(2024. 12. 31.기준)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생략)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 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생략)

또한 동법 제13조4)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표 1]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립·지정 및 지원

구분		주체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제2조제3호
	설치·운영 비용 보조	국가·지자체	제6조제2항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립·운영 비용 보조	보건복지부장관	제14조제4항제2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도지사	제13조제1항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13조제4항

자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각 조항을 바탕으로 작성

□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고려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현행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지원 등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가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직접 설립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형태인데, 이와 관련된 동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는 법률 개정⁵⁾을 통해 2013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국가 등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만이 공공보건 의료수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공공보건의료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⁶⁾한 것임.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국가 등에 의한 직접 설립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수행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의 의료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며,

공익적 목적하에 설립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재정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대표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 유형 중 하나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총 35개소⁷⁾ 중 2개소(원주의료원, 울진군의료원)를 제외한 33개소가 모두 당기순이익 손실(적자)로 나타남(상세내역: [참고2]).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1247호, 시행 2013. 2. 2., 전부개정 2012. 2. 1.)을 통하여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및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신설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법률 제11247호, 시행 2013. 2. 2., 전부개정 2012. 2. 1.)

7) 2023회계연도 결산공시 기준 개소 수로, 분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총 개소 수(37개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의료공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현행 제도를 활용한 개정안 취지의 달성 가능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대상 인프라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함.

그러나 현재 법 규정으로도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분만·소아청소년과 등 분야별 취약지 지원 사업을 실시 중으로,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대한의사협회)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부실한 의료기관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취약지 문제는 단순히 공공병원 신설만으로 해결될 수 없어 개정안은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으로 이에 반대함.

- 따라서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지원 방안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의료취약지의 명확한 정의와 지역 분류 기준의 설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효율적 운영과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규 설립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신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보다는 기존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인력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1】	 시도별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	-------------------------

(단위: 개소)

구분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계
서울	23	61	84
부산	9	45	54
대구	9	45	54
인천	8	71	79
광주	8	25	33
대전	8	19	27
울산	1	25	26
세종	1	19	20
경기	30	343	373
강원	18	256	274
충북	11	272	283
충남	10	410	420
전북	12	409	421
전남	22	573	595
경북	24	540	564
경남	21	421	442
제주	5	67	72
전국	220	3,601	3,821

주: 1.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미하며, 2023. 12. 31.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228개소)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작성

2. 지역보건의료기관: 2023. 12. 31.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23년 공공의료기관 현황』 (2024. 8.) 및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을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 2】 지방의료원 적자(당기순이익 손실) 현황 (2019~2023년회계연도 결산)

(단위: 백만원)

연번	시도	기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서울	서울의료원	-9,905	4,051	4,396	-26,889	-37,955
2	부산	부산의료원	4,775	3,608	29,025	-3,686	-17,850
3	대구	대구의료원	-2,475	4,482	22,476	13,482	-11,670
4	인천	인천의료원	3,318	13,712	20,461	6,317	-11,370
5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81	1,923	9,636	2,626	-11,388
6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15	2,315	2,705	-3,378	-9,273
7	경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1,199	3,518	20,913	446	-10,037
8	경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959	4,962	25,005	10,072	-4,210
9	경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1,976	4,109	10,889	1,755	-10,991
10	경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269	1,239	10,406	1,701	-9,576
11	경기	성남시의료원	(개원전)	-7,980	27,659	1,259	-23,701
12	강원	강릉의료원	-39	-876	10,410	2,070	-5,179
13	강원	속초의료원	256	-1,394	10,771	2,140	-6,168
14	강원	원주의료원	3,276	3,664	5,692	8,671	4,985
15	강원	삼척의료원	4,037	224	5,397	-143	-4,401
16	강원	영월의료원	-520	365	-2,892	124	-3,682
17	충북	청주의료원	405	-2,234	6,914	-2,800	-15,473
18	충북	충주의료원	-50	-2,173	4,505	10,638	-11,273
19	충남	천안의료원	-935	-824	15,075	-215	-10,640
20	충남	공주의료원	-450	-1,234	13,222	585	-8,494
21	충남	서산의료원	-544	-1,844	5,832	6,338	-6,784
22	충남	홍성의료원	-826	-4,357	20,045	3,289	-12,076
23	전북	군산의료원	6,107	2,816	14,790	7,623	-8,422
24	전북	남원의료원	-1,565	-6,017	13,058	4,413	-13,927
25	전북	진안군의료원	-777	-1,004	-330	77	-80
26	전남	순천의료원	-888	388	6,352	4,555	-1,825
27	전남	강진의료원	-1,995	-743	4,619	1,220	-3,522
28	전남	목포시의료원	404	1,387	9,660	7,658	-1,951
29	경북	김천의료원	3,014	1,142	2,416	6,574	-5,317
30	경북	포항의료원	129	919	16,549	6,857	-4,384
31	경북	안동의료원	-1,539	-1,038	14,186	8,726	-3,224
32	경북	울진군의료원	1,581	1,416	52	-693	52
33	경남	마산의료원	4,731	4,794	13,445	464	-10,566
34	제주	제주의료원	-732	352	2,144	4,560	-5,006
35	제주	서귀포의료원	2,707	-1,618	5,566	1,310	-12,012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를 바탕으로 작성